붙임 2 시장확대형(민간투자연계-기업신청) 신청 · 접수 안내

□ 사업목적

○ 민간의 선별·육성 역량을 활용하여 민간 주도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

□ 지원규모 : 113억원, 65개 과제 내외

내역사업	구분	모집과제수
시장확대형 (민간투자연계)	상반기(4월 지원과제)	29개 내외
	하반기(7월 지원과제)	36개 내외

□ 지원분야

○ 「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」을 통해 도출된 전략품목에 대해 "품목 內 자유응모" 방식으로 지원 : [별첨] 참조

□ 지원대상

○ 민간의 투자를 받은 유망기업 중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

- 민간투자 혹은 기보 보증연계 투자를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 받은 기업 중 기술개발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

* 민간투자 금액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3년 이내 기준으로 산정하며, 금액은 기간 동안 누적 금액 기준(단, 채권발행의 경우 7.5억원 이상 인정)

* 주식과 채권을 혼합할 경우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1:1.5로 계산(ex)주식 3억원과 채권 3억원(2억원*1.5)을 받아야 인정)

* 단주차이로 요건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, 해당 금액으로 간주 예정

• **(투자 증빙 서류)** ① 투자계약서 사본 ② 법인등기부등본(투자금 등기 완료내용 포함) ③ 주주명부 1부(주식투자에 한함)

< 투자심사 유형 및 조건 >

투자방식	투자금액	개 념
신주발행(보통주, 우선주)	5억원 이상	유상증자를 통하여 신규 발행된 주식
신권발행(CB, BW)	7.5억원 이상	신규로 발행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

• **(투자기관 및 조건)** 아래 투자기관과 무담보 조건으로 투자계약 체결해야 하며, 아래 투자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요건제외

< 투자기관 및 조건 >

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(벤처투자조합* 포함),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(신기술사업투자조합 포함), ④ 한국산업은행, ⑤ 중소기업은행, ⑥ 은행, ⑦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, ⑧ 창업기획자, ⑨ 외국투자회사**

* 한국벤처투자에서 집행하는 매칭 펀드(하이테크 기술사업화 펀드, 일자리 매칭 펀드 및 엔젤투자 매칭 펀드)에 따른 투자 계약은 제외

**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2조의3에 따른 외국투자회사

□ 지원내용

○ 지원기간 : 최대 2년 이내

○ 지원한도 : 최대 6억원 이내(연 최대 3억원 이내)

□ 연구개발비

○ 정부지원연구개발비 : 연구개발비의 80% 이내

○ 기관부담연구개발비 : 연구개발비의 20% 이상

*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금+현물) 중 10% 이상 현금으로 부담

※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는「코로나-19로 인한 중소기업 R&D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지침(중기부 고시 제2023-11호, '23.2.14)」에 따라 연장하여 비율 완화 적용

<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>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분	정부지원 연구개발비	기관부담연구개발비			총 연구개발비	개발기간
	현금	현금	현물	합계		
1차년도	150	4	36	40	190	6개월
2차년도	300	8	72	80	380	12개월
3차년도	150	4	36	40	190	6개월
합 계	**600**	**16**	**144**	**160**	**760**	**24개월**
정부출연금 비율(%)	**80.0**	**-**	**-**	**20.0**	**100.0**	**-**

○ **(하반기)**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6개월, 이후 2차년도부터는 12개월 지원예정으로 연구비도 이를 반영하여 신청

* 일괄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총 연구기간에 따라 작성해야하며, 1차년도는 과제 개발 시작일('23.7.1)로부터 '23.12.31까지로 설정

<연구개발 기간 예시>

구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
하반기	`23.7.1~`23.12.31(6개월)	`24.1.1~`24.12.31(12개월)	`25.1.1~`25.6.30(6개월)

○ 선정평가 결과,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 조정 가능

* 연구개발비 및 개발 기간의 조정은 주관연구개발기관별 별도 안내

□ 신청 · 접수기간

○ **(하반기, 7월 지원과제)** 2023. 5. 31.(수), 9:00 ~ 6. 12.(월), 18:00까지

□ 신청 및 접수방법

○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· 접수 : [붙임1] 참고

연구(책임)자가 NRI 가입,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.갱신 (학력, 경력 등)	➡	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(기관담당자 권한 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	➡	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획서, 제출서류 등 등록	➡	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최종 확인 · 승인	➡	연구과제 신청완료
연구자		**주관연구개발기관**		**연구책임자**		**주관연구개발기관**		

☞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IRIS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, 반드시 본인인증 및 소속기관 등록 완료 필요

☞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

☞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~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

☞ **과제접수 매뉴얼** 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http://www.iris.go.kr) 로그인 → R&D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→ R&D 고객센터 → IRIS 사용 매뉴얼 → [IRIS R&D 통합업무포털-연구자용]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(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)

☞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 과제접수가 마감되며,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 마감일 18:00까지만 가능

□ 필수 제출서류

☞ 신청방법 : www.iris.go.kr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통합업무 포털서비스(R&D업무포털) → 사업공고→ 신청공고 목록→ 정부부처(중소벤처기업부) 및 전문기관(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) 검색 → 해당 공고 접수 클릭·신청하기 → 온라인 내용 입력 및 제출서류 등록

☞ 신청서류 : www.iris.go.kr → 로그인 → 통합업무 포털서비스(R&D업무포털)→ 사업공고→ 신청공고 목록→ 정부부처(중소벤처기업부) 및 전문기관(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) 검색 → 해당 공고 선택 → 첨부파일 확인

연번	서 식 명		제출서류	
			필수	해당시
①	**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** *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'23. 7. 1.로 기재 (단,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) * (본문1) **20페이지 이내** 작성,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* (본문2)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	본문1	O	
		본문2	O	
②	**신용상태 조회.정보 활용 동의서**		O	
③	**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**		O	
④	**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** *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. 단,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		O	
⑤	**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(2022년)**		O	
⑥	**중소기업 확인서**		O	
⑦	**투자 증빙 서류** 1. 투자계약서 사본 2. 법인등기부등본(투자금 등기 완료내용 포함) 3. 주주명부 1부(주식투자에 한함)		O	
⑧	**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** *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(확정)한 자료에 한함 * 접수 마감 이후 추가 제출 불가			O

□ 선정절차

☞ 평가, 선정,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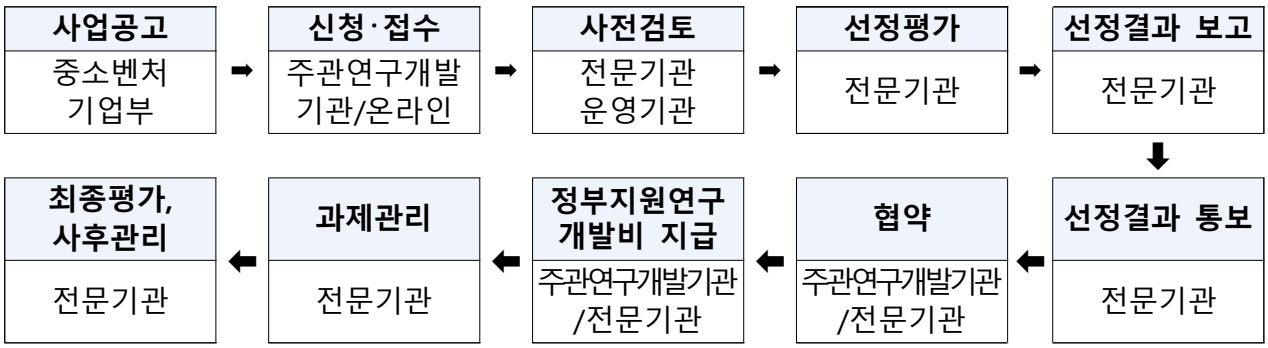

* (주관연구개발기관) 과제 신청기업, (전문기관)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(운영기관) 한국벤처캐피탈협회

** 선정평가 방식은 코로나19 방역단계 조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□ 사전검토

○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과제신청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하며,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

*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<붙임> 참조

□ 선정평가

○ 기술분야별 산・학・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, 연구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- 기술성, 사업성, 기술개발역량, 파급효과,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·평가

$$\text{종합평점} = \frac{\text{선정평가 점수합계} - (\text{최고점수} + \text{최저점수})}{\text{평가위원 수} - 2} + \text{가점} - \text{감점}$$

□ 지원과제 확정

○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를 지원과제로 추천하고, 추천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

□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

○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아 과제를 수행

□ 문의 및 사업안내

담당기관(부서)		문의사항	전 화
사업총괄	중소벤처기업부	시행계획 공고	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 1357
전문기관	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(민간투자협력실)	민간투자연계 관련 신청・접수, 연구개발계획서 작성, 과제평가, 유의사항 등	02-2280-0422 02-2280-0427
운영기관	한국벤처캐피탈협회	민간투자 조건 적합 여부 등	02-2280-0424~6

☞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

○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: http://www.iris.go.kr
○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: http://www.smtech.go.kr
○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: "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" / http://pf.kakao.com/_llfqd

참고 | **가·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(증빙서류)**

□ 가 · 감점

○ (가점)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분야별 최대 가점을 고려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할 수 있다. (단, 공통가점 중 **성과창출 강화**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)

<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공통 가점 >

분야	우대사항	가점	확인방법 (증빙서류)
성과창출 강화	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'우수' 판정을 받은 기업	1점	최종평가확인서 등
	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'우수'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* 최종평가 결과 '우수'판정 통보 시점의 연구책임자	1점	최종평가확인서 등
	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기업	2점	표창장 등
	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	2점	표창장 등
생태계 보완	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경우	1점	「여성기업법」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서
	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 경우	1점	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(장애인등록증 확인 필)
	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	1점	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(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)
	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위기업종 관련 기업 * 「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」 제9조 및 「지역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	1점	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(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)

<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시장확대형, 민간투자) 가점 >

연번	가점 사항	가점	확인방법 (증빙서류)
①	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포스트팁스(Post-TIPS)에 선정되어 사업화 자금을 모두 지원받았거나, 지원받고 있는 기업(협약체결 후 제외대상으로 요건제외 된 경우 제외)	3점	결과 공문 또는 확인서 등 전문기관 발급 확인서 (전문기관 확인)
②	마이스터고등학교·특성화고등학교·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(계약학과, 기술사관, 취업맞춤반)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	1점	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
③	「K-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」에 선정된 중소기업	1점	예비유니콘 인증서 (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)
④	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	1점	명문장수기업 확인서
⑤	「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」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	1점	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
⑥	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	1점	벤처기업 인증서 (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)
⑦	「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	1점	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 인증서(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)
⑧	「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(MAIN-BIZ)	1점	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 (MAIN-BIZ)(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)

○ (감점)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부여

연번	감점 사항	감점	확인
①	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	10점	전문기관 확인
②	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*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* 정당한 사유 : 1.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, 2.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	1점	